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7월 29일, 김남희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 2026년 7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

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8. 31.) 상정, 축조심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4.)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 폐기)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9. 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남희의원)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예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호법익과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위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개정안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죄의 실체를 충분히 규명하기 어려운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 경우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이행한 뒤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의견청취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스토킹범죄는 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지속되는 과정에서 그 위법성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어 수사 초기에는 개별 행위만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관계 및 범죄 성립 여부를 재검토함으로써 충실한 수사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유사한 취지에서 성폭력범죄에 관한

사건 송치 의무를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20226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노인 학대관련범죄에 관한 사건송치 의무를 각각 규정하는 개정안이 보건 복지위원회에,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에 관한 사건송치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성평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안 부칙 제1조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임에 따라 이와 일치시키기 위한 취지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의겸위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